

## 동두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39
----------	-------

제출연월일 : 2003.11.

제출자 : 동두천시장

### □ 개정이유

2002.2.24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폐정67511-949호, 2003.9.3)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를 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정함  
(안 제4조의2)
- 나.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및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에 관하여 정함  
(안 제4조의4, 제4조의6)
- 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처리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의5)
- 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안 별표 1)

동두천시조례 제 호

### 동두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을 위한 지도)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시장은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구시는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관계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분을 비밀로 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위의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사실여부를 확인후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제4항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 경우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의3(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 과태료 부과) ①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4조의4(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세제곱센치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4조의5(신고서 처리등) ①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 하여야 하며,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 확인 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하여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

과 제출된 증거물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⑤시장은 제4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2항의 감면 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된 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조의6(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법 제25조”를 “법 제31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법 제15조4항”을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법 제10조제1항”으로 “법 제16 조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위반행위신고별	포상금액	비고
1.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20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70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20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10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70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위반행위신고별	포상금액	비고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2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70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7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2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7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00	

<별지 제1호서식>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호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연락처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도        시        동        번 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인

동두천시장 귀하

—절 취 선—

###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 ② 어 디 서 :       도       시       동       번지
  - ③ 위 반 종 별 :
  - ④ 상 황 설 명 :
  - ⑤ 증 거 물 등 확 보 여 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 ⑥ 기 타 참 고 사 항 :
- (피신고자 의견)

---



---



---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



---



---

(담당공무원의 의견)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동두천시장 귀하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1회용품등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p> <p>①시장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재활용촉진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4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을 위한 지도)</p> <p>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의2(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시장은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한 위반사업장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이 요구시에는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관계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분을 비밀로 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p>



현 행	개 정 안
<p>&lt;신설&gt;</p>	<p>제공하는 행위</p> <p>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세제곱센치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p> <p>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p> <p>제4조의5(신고서 처리등)①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 하여야 하며,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하여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p> <p>③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p>

현 행	개 정 안
<p>&lt;신설&gt;</p>	<p>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p> <p>④제3항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p> <p>⑤시장은 제4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2항의 감면 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p> <p>⑥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p> <p>제4조의6(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li> <li>2.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li> <li>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li> </ol>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일반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등)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등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p> <p>제6조(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①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4.(생략) ② (생략)</p> <p>제8조(보고 및 검사등) ①(생략) 1.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배출자 ② (생략)</p>	<p>원을 초과한 경우</p> <p>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p> <p>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p> <p>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p> <p>②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일반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등) ---- 법 제15조제1항 ----- ----- ----- ----- ----- -----</p> <p>제6조(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①----- 법 제31조 ----- ----- 1. ~ 4.(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보고 및 검사등) ①(현행과 같음) 1. 법 제10조제1항 ----- 2. 법 제15조제1항 ----- ----- ② (현행과 같음)</p>